칠곡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칠곡군 경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1. 제안이유

「2030 칠곡군 경관계획」수립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설정하고 운영하여 칠곡군 경관자원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정함(안 제21조)
-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정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 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칠곡군수(참조: 건축디자인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 우)39888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칠곡군청 건축디자인과 ☎)054-979-6873, FAX)054-979-6879, 전자우편)saz8@korea.kr

4. 자치법규 내용

칠곡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및 제2호 중 "이상인 사업"을 각각 "이상인 사업(보상비용 제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하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및 도시구조물(교량, 지하차도, 육교 등)

- 나. 국가. 도 및 군의 지정 문화재
- 다.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사적지
- 라. 랜드마크적인 상징 조형물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부분) 제1호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을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별표"를 "[별표]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
- 2. 「문화재보호법」및「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은 건축물
- 3. 칠곡군 건축위원회, 군계획위원회 심의 시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 지침 제2장제4절, 제3장제4절, 제4장제3절 등에 의거한 경관심의도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제22조 관련)

1. 중점경관관리구역(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분 류	건축물의 종류
 1) 왜관읍 중점경관관리구역 2) 북삼읍 중점경관관리구역 3) 석적읍 중점경관관리구역 4) 호국평화 중점경관관리구역 	3층 이상 또는 지상층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6) 매원마을 중점경관관리구역	모든 건축물

[※] 층수, 연면적 산정기준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공공건축물(제22조제1항제2호 관련)

분 류	건축물의 종류
공공청사	지방자치단체 청사, 동 자치센터, 소방서, 공공교육·연수시설 등
문화복지시설	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국공립 의료시설, 기념관, 박물관, 전시관, 노 유자시설 등
교통관련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환경시설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등
화장시설	화장장, 납골당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혂 햀 개 아 정 제21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 제21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 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 의 대상 및 규모) -----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 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 이상인 사업(보상비 용 제외)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 이상인 사업 (보상비용 제외) 3.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설 3. -----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대상에 -----치되는 경관 조명시설로 총 사 업비가 2억원 이상인 사업 가.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 <신 설> 물 및 도시구조물(교량, 지하 차도, 육교 등) 나. 국가, 도 및 군의 지정 문화 재 다.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사적지 주변 라. 랜드마크적인 상징 조형물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2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점경관관리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u>군수가 필요하다고</u> 요청하는 사항
-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 곱미터 이상의 <u>별표</u>에 해당하는 건축물(다만, 설계공모, 제안공모 등의 공모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생략)

<신 설>

<신 설>

1			
	[별표]	제1호에	해당
하는 건축	물		
2			
	[별표]	제2호	
3. (현행과 기	같음)		

-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 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 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건 축물
- 2. 「문화재보호법」및「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 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건

<u>축물</u>

3. 칠곡군 건축위원회, 군계획위원 회 심의 시 국토교통부 경관심 의 운영 지침 제2장제4절, 제3장 제4절, 제4장제3절 등에 의거한 경관심의도서를 제출하여 심의 를 받은 경우

붙임 2

관계법령



🔳 경관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홍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13.>

-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 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건축물
-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 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관법 시행령

-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 인 사업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5. 22., 2017. 2. 28.>
 - 1.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이하 이 호에서 "기본설계"라한다)를 완료하기 전에 마칠 것.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 2. 사회기반시설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 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 다.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의 경우: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 ③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2. 28.>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 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도시·조경·환경 등 경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며, 3명 이상

- 이 경관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것
- 2.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 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이 경우 2)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한다.
 - 1) 발주청에서 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2)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가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 · 제3항 및 제4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중 "경관위원회"는 "발주청에서 구성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제25조제4항 중 "제2항제3호"는 "가목2)"로 본다.
-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2. 28.>
 -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 2.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 3.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
 - ③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2., 2015. 12. 28., 2016. 7. 6., 2017. 2. 28., 2017. 7. 26.>
 -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중앙 농업· 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 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연구 개발특구위원회
- 사. 「항만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 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새만 금위원회
-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도지사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 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 획위원회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농촌및식 품산업정책심의회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 회
 - 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 청이 소속한 시·도의 지방의회를 말한다)의 의원
-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 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2. 28.>
-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 2. 부위원장
 -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시·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3 규제영향분석서

I -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 제 사 무 명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2.	구 분	신설	강화	0	내용 심사	<u>존</u>	·속기한 - 장			
3.	소관부서 및 작 성 자 인 적 사 항	건축디자인과 윤노영, 건축디자인담당 이무열, 담당자 이동준								
4.	근거법령명 등	경관법 제28조								
5.	자 치 법 규 명	칠곡군 경관 조례 제22조								
6.	피 규 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 피규제자 피허가자 불특정 다수 역			्रो श्रेष्ट्राचा व		의견내용 입법예고시 의견청취			
7.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현행규제》 제2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 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점경관관리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강화규제≫ 제2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점경관관리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별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1. 중점경관관리구역(제22조제1항제1호 관련보류) 건축물의 종류 보류 건축물의 종류 1) 왜관읍 중점경관관리구역 3층이상 또는 지상층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3) 석적읍 중점경관관리구역 기상층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건축물 5) 매원마을 중점경관관리구역 모든 건축물					
8.	규 제 의 존 속 기 간	법령 및 조례	개정 시	까지						

Ⅰ-Ⅱ.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 『경관법』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5년마다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며,『경관법』제9조(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경관계획에서는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 성하여야 할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여야 함. 또한, 『경관 법』제28조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례로 규 정하여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나. 규제의 강화 필요성

○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한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칠곡군의 중점경 관관리구역 설정하여 단·장기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형성 할 필요가 있음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반대 가능성 있음
- 나. 규제의 실현가능성
 - 칠곡군 경관 계획 재정비 추진시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하여 반영하였으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가. 기존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부
-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부
-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가. 규제의 비용분석
 - 경관심의 대상 확대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증가로 인한 위원 수 당 비용 증가

- 나. 규제의 편익분석
 - 경관심의를 통해 건축물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 고 지역성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음
-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비용대비 편익성이 더 높은 것으로 검토됨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부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부

6.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적정성

○ 경관법 제 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임

나. 실효성

○ 규제의 기준과 절차 및 이해 용이성 측면에서 명확하므로 행정적 집 행의 무제는 없음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해당사항 없음

8. 행정기구 ·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사항 없음

붙임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칠곡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조례 개정 시 심의 대상 확대로 위원회 위원 수당 증가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 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발생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라.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팀 지방시설서기 이 동 준

담당부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건축다자인팀장/이무열 담당자 이동준/6873